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약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년월일 : 2023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정신의료기관 지정, 예산 지원 등(안 제4조, 제10조)
- 마.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정책보좌관(‘24년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예산수요건)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 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예산확보 노력 필요)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법제심사 결과 : 검토 의견 참고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부서의견
법제심사	제7조제3항: 연임횟수의 제한이 없어 계속 연임 가능하므로 신규 민간위원 위촉에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민간위원은 정신건강전문기관 소속으로 다년간의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신규 민간위원 위촉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향후 협의체 운영시 참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

응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의 지정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 성북경찰서 담당 부서장과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2. (경찰) 종암경찰서 담당 부서장과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3. (소방) 성북소방서 담당 부서장과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4. (정신건강전문기관) 정신의료기관 담당
5. (정신건강전문기관)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
6. (그 외)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정신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 참석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

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의 행정
입원 또는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신응급 대응 관련 공공병상 확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4년 정부안 확정(’23.8.29.)에 이어 예산 배분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수요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자치구에 교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직접 공공병상(10억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운영 예정으로 별도의 예산확보는 필요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함.

4. 작 성 자

보건소 의약과장 김경희